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2월 27일 경기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3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06. 3. 8. 12 : 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가.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일부를 교육장과 각급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 기존에는 교육장·각급학교장·직속기관장·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별표로 규정되었던 것을 체계적인 위임사무 관리를 위하여 조문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 소속(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 사립학교 교원의 해직요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 학교형태의 초·중학교과정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
 -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한 무인가 학교의 단속 및 폐쇄명령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춘식)

- 본 개정조례안은 1973. 9. 14 조례로 제정된 이후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 9차례에 걸쳐 28건의 사무를 위임하는 개정을 하였으며, 이번 개정 내용에는 총 10건의 사무를 지역교육장(7건), 학교장(2건), 직속기관장(1건)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 또한 기존 위임사무를 별표로 열거함으로써 위임사무의 일부를 개정하더라도 별표 전체에 대한 연혁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각 사무별로는 언제 개정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별표를 조문형식으로 변경하여 위임사무의 연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위임사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기존조례의 용어 중 관내→관할로,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소속 공무원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표현을 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
- 따라서 이번에 위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를 위임받을 하급기관의 각 부서간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조율을 거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회개정 사무위임 내역 : 별첨

위임대상별 신설 위임사무 구분

위임대상	위 임 사 무 명
교육감 → 교육장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검직허가(학교 제외)
	4. 사립학교 교원의 해직 요구
	5.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6. 학교형태(초·중학교과정의 학력인정시설 포함)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
	7.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한 무인가 학교의 단속 및 폐쇄명령
교육감 → 학교장	8. 지방공무원의 검직허가(초·중학교 포함)
교육장 → 학교장	9. 취학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교육감 → 직속기관장	10. 지방공무원의 검직허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교육감은 그 사무의”를 “교육감은 위임한 사무의”로 하여 동조를 제2조로 하고, 제4조 내지 제6조를 제3조 내지 제5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학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장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관할 유치원, 초·중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4.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별정직)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보직임용 및 시보해제
5.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관내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경징계
6.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7. 소속(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
8. 소속(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11. 소속(학교 제외)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2. 관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해직요구
13. 초·중학교과정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14.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학교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15. 학원(과외교습소 포함)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
16.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17. 관할 공립학교의 설립·폐지
18. 관할 사립학교의 설립·폐지인가
19.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
20.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22.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한 무인가 학교의 단속 및 폐쇄명령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결직허가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장 제외)
4. 장학생 선발 추천 및 장학금 지급
5.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운영지도
6. 학비감면
7.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
8.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기관장 제외)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결직허가
4.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기능직 및 별정직 포함)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임용

5.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제9조(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3.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교육위원회내 전보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차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위임사항) 교육감의 권한 중 하급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삭제></p>
<p>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교육감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2조(감독) 교육감은 위임한 사무의----- ----- ----- -----</p>
<p>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p>	<p>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 ----- ----- -----</p>
<p>제5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명의 표시) ----- ----- ----- -----</p>
<p>제6조(재위임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p>	<p>제5조(재위임의 금지) ----- ----- ----- -----</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 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 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학교” 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2. 교육장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관할 유치원, 초·중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4.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별정 직 포함)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 직·직위해제·복직·보직임용 및 시 보해제 5.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 진임용·전직·관내전보·겸임·파 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 직·면직·해임 및 파면·경징계 6.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 공무원 선발 7. 소속(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8. 소속(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 망조위금 결정·지급 11. 소속(학교 제외) 공무원의 공무원 증 발급 12. 관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해직요구 13. 초·중학교과정 학교형태평생교육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 (학력인정 포함)</u></p> <p>14. <u>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학교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u></p> <p>15. <u>학원(과외교습소 포함)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u></p> <p>16. <u>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u></p> <p>17. <u>관할 공립학교의 설립·폐지</u></p> <p>18. <u>관할 사립학교의 설립·폐지인가</u></p> <p>19. <u>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u></p> <p>20. <u>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p> <p>21. <u>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추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u></p> <p>22.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한 무인가 학교의 단속 및 폐쇄명령</p> <p>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p> <p>1. <u>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u></p> <p>2. <u>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u></p> <p>3. <u>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장 제외)</u></p> <p>4. <u>장학생 선발 추천 및 장학금 지급</u></p> <p>5. <u>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운영지도</u></p> <p>6. <u>학비감면</u></p> <p>7. <u>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8. <u>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u></p> <p>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u>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기관장 제외)</u> 2. <u>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u> 3. <u>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u> 4. <u>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기능직 및 별정직 포함)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임용</u> 5. <u>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u>
<p><신 설></p>	<p>제9조(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u>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u> 2. <u>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u> 3. <u>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교육위원회내 전보</u>